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76 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김소희・우재준・김예지

박덕흠 • 김상훈 • 이헌승

최은석 • 박정훈 • 김선교

최수진 • 유용원 • 주호영

조경태 · 엄태영 · 고동진

김위상 · 한지아 · 김장겸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,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 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 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,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) 정부는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 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분야별 기후변화 영향
	예측) 정부는 「기후・기후변
	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
	률」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
	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
	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
	측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.